

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포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포상 조례

2. 개정이유

- 포상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,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규칙과의 정합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관련 사항 정비(안 제4조, 제8조)
- 나. 정확한 명칭 표기를 위한 일부 용어 정비(안 제11조)
- 다. 포상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신설함(안 제16조)
- 라. 포상 분실 등으로 추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하는 「포상수여 사실확인서」에 담당자 작성란을 추가함(안 별지 제6호서식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행정지원과 인사팀(우 10932)
 - 전화 : 031-940-4121 / 팩스 031-940-4109 / 이메일 tml6524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포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